

#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3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1. 6. 23. 시행)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(안 제2조제2항)

1)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

2) 근거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1. 3. 15~3. 25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등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</li> <li>2.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등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</li> <li>2.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li>3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</li> </ol>